

# 평창군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19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15. 10. .

제 출 자 : 평 창 군 수

## 1. 제안이유

- 노인복지법 시행령에 합치하지 아니하는 부분을 개정하여 위법성을 해소하고 법에 합치하는 군정을 구현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### ○ 조례안 제3조제2항 수정

-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4조제3항에 따른 차등지원 근거규정 마련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별첨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

1) 입법예고(2015. 09. 23. ~ 2015. 10. 13.) 결과 : 제출의견 없음.

2) 규제심사, 부패영향평가, 성별영향분석평가 : 원안 동의

평창군 조례 제 호

## 평창군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평창군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② 군수는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43조의2에 따른 시설평가의 결과 등 당해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실적을 고려하여 차등하여 보조할 수 있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          행	개           정           안
<p>제3조(경로당 지원) ① (생   략)</p> <p>② <u>군수는 경로당의 이용인원, 시설규모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.</u></p>	<p>제3조(경로당 지원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<u>군수는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43조의2에 따른 시설평가의 결과 등 당해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실적을 고려하여 차등하여 보조할 수 있다.</u></p>

#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## 1. 비용발생 요인

- 비용발생 요인 없음.

## 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 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」 제3조제5항제1호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함.

## 3. 미첨부 사유

-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 발생 없음.

## 4. 작성자

작 성 자	주민생활지원과장 남 동 선
연 락 처	(033)330-2150

# 관계 법령

## □ 노인복지법 시행령

제24조(비용의 보조) ① ~ ② 생략

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하는 때에는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43조의2에 따른 시설평가의 결과 등 당해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실적을 고려하여 차등하여 보조할 수 있다.